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69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이성윤 · 김 윤 · 김준혁  
최기상 · 조계원 · 손명수  
양부남 · 복기왕 · 서삼석  
윤준병 · 서미화 · 윤종균  
차규근 · 이정문 · 김 현  
의원(15인)

제안이유

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전 시행 이래 법원 업무 분담 효율화, 비송 사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전반적으로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보좌관이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수행하면서도 해당 직책 명에서 ‘보좌’라고 칭하고 있어, 직책명이 그 업무상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음. 아울러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를 당초 제도 시행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사법분야 담당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

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사법 공무원 직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 주요내용

- 가.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변경(안 제54조 제목 및 각 항 본문).
- 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절차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1호).
- 다. 재산명시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2호).
- 라.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추가(안 제54조제2항제4호)
- 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확대(안 제54조제2항제5호).
- 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6호 신설).
-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

제7호 신설).

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8호 신설).

자.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안 제54조제2항제9호 신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사법보좌관)”을“(사법심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법보좌관”을 각각 “사법심사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절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화해절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행문 부여명령절차”를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로 하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를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를 “포기취소 신고의 수리, 실종의 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8.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9.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중 “사법보좌관”을 각각 “사법심사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법보좌관은 이 법에 의한 사법심사관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u>사법보좌관</u>을 둘 수 있다.</p> <p>② <u>사법보좌관</u>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는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u>집행비용액</u> 확정결정절차, 독 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 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 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p> <p>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u>집행문 부여명령절 차</u>,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p>	<p>제54조(사법심사관) ① ----- -----<u>사법심사관</u>을 --- -----.</p> <p>② <u>사법심사관</u>----- ----- -----.</p> <p>1. ----- ----- ----- -----<u>집행</u> <u>비용액</u> 확정결정절차, 소송이 <u>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u> <u>경우에 하는 소송비용 부담절</u> <u>차</u>,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u>끝난 경우에 하는 집행비용</u> <u>부담절차</u>, <u>제소전화해절차</u>, - ----- ----- -----</p> <p>2. ----- ----- -----<u>집행문</u> 부여명령절차, <u>재산명시절차</u>, -----</p>

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생략)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신설>

-----  
-----  
-----  
-----  
-----  
-----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신청·변경·취소 등의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3. (현행과 같음)

4. -----  
-----  
-----포기취소 신고의 수리, 실종의 선고,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6.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및 그 취소절차에서의 가정법원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의 사무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8.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약식재판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9.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심사관-----, 사법심사관-----

-.

④ 사법심사관 -----  
-----  
-----  
-----  
-----.

⑤ 사법심사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규칙으로 정한다.